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현황 및 허가, 신고 절차



I. 법률 체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총 6장, 제4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시행령은 총 30조, 법률 시행규칙은 모두 19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률의 내용은 크게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의 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는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에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겨 있다.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조항들은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과 제5장 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II. 주요 제정 내용

1. 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조

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가 되기 위한 허가절차는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2.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신고절차는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제3조, 제4조, 시행규칙 제5조,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 제5조와 제9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변경시, 변경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3. 위치정보사업 등의 양수·합병, 휴지·폐지 등에 관한 사항

사업 양수, 합병시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법 제7조, 제10조], 사업 휴지, 폐지시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법 제8조, 제11조]. 양수, 합병시 인가 및 신고절차는 시행규칙 제6조, 휴지, 폐지시 승인 및 신고절차는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4.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에 의해 사업의 폐지,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5조, 별표를 참조한다.

5.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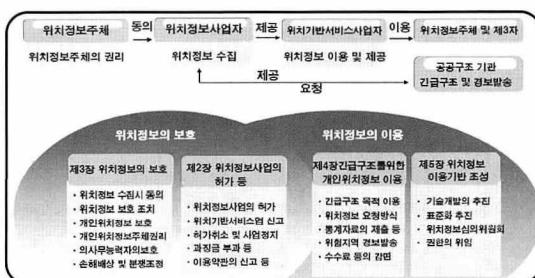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다. 개인 위치 정보주체의 보호에 대해서는 시행령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6. 위치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지방법은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법 제20조]. 개

위치정보의 법률 체계 구성도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 법률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정리 | 편집부

인위치정보의 제공요청 절차는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양도, 합병·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법 22조), 통지방법은 시행령 18조에 명시했다.

7.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등

긴급구조목적의 개인위치정보이용은 시행령 제20조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보발송의 요청 및 제공방법은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명시했다.

III.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1. 허가 대상자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려는 자로 법인의 대표자, 설립하고자 하는 주주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제출시 기재사항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기재할 사항은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영업기획서, 기술기획서 등 크게 세 가지다.

3. 허가 심사항목 및 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조치, 재정 및 기술적 계획 등을 심사하여 허가를 결정한다. 심사시 배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위치정보 서비스규모의 적정성 30점,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4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30점, 산업발전 및 공익기여 실적과 계획 5점이다.

4. 허가 결정 및 통보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범위 내에서 허가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 일정

- 허가접수기간 : '05. 8월중
- 접수장소 :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 허가신청서류 :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요약문, 본문 1,2,3권 및 부속서류(원본 1권, 사본 20권 및 CD 1벌 등)

• 허가심사 : 약 2개월 소요

• 허가결정 : 10월 경

IV.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사업계획신고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지역 체신청에 제출하고 위치기반서비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위치정보보호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증빙서류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 등이 자동으로 기록 보존되는 위치정보시스템이다. 신고 접수는 금년 8월 이후 지방 체신청 별로 받는다.

V. 향후 계획

정통부는 올 7월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7월 28일부터 법률을 시행한다.

올 8월 28일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에 들어가고, 10월에 위치정보사업자를 허가해 줄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절차

